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41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18일

발 의 자 : 강성삼 의원

1. 개정이유

-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 발생 및 범죄 취약지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 등 설치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좌·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안 제3조 제1항 제4호)
- 나.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책임자는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좌·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3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6.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년 5월 18일 ~ 5월 26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7.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기존 제4호를 내용 변경 없이 제6호로 변경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좌·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5.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대변기 좌·우 옆 칸막이는 파손의 우려성이 없는 재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책임자는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좌·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 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 내에 손건조기, 종이 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p>5. (신 설)</p> <p>4.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신 설)</p>	<p>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1호 ~ 3호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좌·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5.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대변기 좌·우 옆 칸막이는 파손의 우려성이 없는 재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p>6. (현행과 같음)</p> <p>②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책임자는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좌·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는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는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